

전기 Q&A



■ 통합접지 방식이 아닌 개보수공사 전기실 SPD 설치

관련조항 _ 판단기준 제18조

Q.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의한 설계도면에 저압 380V ACB 후단 각 부하 전단 MCCB 전단에 공통으로 SPD 120kVA가 설계사무소에서 표시되어 있는데, 현 설비는 접지가 각 1,2,3종으로 구분 통신 및 피뢰침 접지가 각각 시공되어 있어 2차 저압설비는 모터 부하일 뿐입니다. 감리자의 판단으로는 제외 대상이라 사료되는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A. ● SPD 시설 기준에 대하여

- SPD 시설은 제18조 제7항에서 KS C IEC 60364에 따라 등전위 접속을 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설계, 시공 모두를 KS C IEC 60364에 따라 할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판단기준 3조~제278조에 따라 제1종, 제2종, 제3종,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경우는 제18조 제7항에 의한 SPD 시설 의무는 없습니다.
- 또한 판단기준 제279조(IEC 60364 표준의 적용) 제2항(동일한 전기사용장소에서는 제1항의 규정과 제3조부터 제278조까지의 규정을 혼용하여 저압의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IEC 표준을 도입한 조항은 제외한다.)에서 판단기준 제279조 제1항(KS C IEC 60364)과 제3조부터 제278조까지 기준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KEA